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 제54조의2의제1항2에서의 순직Ⅲ형은 순직Ⅱ형과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순직 분류기준표[별표 8]의 순직 2-3-1(순직Ⅲ형)은 순직 I·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평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은 유사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순직Ⅲ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족들이 지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대부분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급사·질병사·자해사·기타(출장, 체력단련, 사기진작, 부대행사 등) 사망을 규정한 순직Ⅲ형에 평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사망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각 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순직Ⅲ형 중 2-3-1을 순직Ⅱ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상자 분류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상이를 입은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 I 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패스트로프 훈련 중 사망한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매복·정찰 중 사망한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 Ⅱ형	2-2-1	순직 I 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3	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 및 2-2-7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4	2-2-1 및 2-2-2, 2-2-7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5	2-2-1 및 2-2-2, 2-2-7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2-6	2-2-1부터 2-2-5까지와 2-2-7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2-2-7	2-2-1 및 2-2-2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순직 Ⅲ형	2-3-1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교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2-3-3	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5	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7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4	2-3-2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비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I형, 순직 II형 및 순직 III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패스트로프 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매복·정찰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1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상이를 입은 사람(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1	2-1-1부터 2-1-1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3	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2-4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
2-2-5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2-6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악화된 사람
2-3-1	2-1-1부터 2-2-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교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3	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5	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7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14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악화된 사람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u><신 설></u>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2-2-7	<u>2-2-1 및 2-2-2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u>
2-2-3	<u>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u>	2-2-3	<u>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 및 2-2-7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u>
2-2-4	<u>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u>	2-2-4	<u>2-2-1 및 2-2-2, 2-2-7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u>

2-2-5	<u>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u>
2-2-6	<u>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u>

2-3-1	<u>순직 I 형 또는 순직 II 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u>
-------	---

2-2-5	<u>2-2-1 및 2-2-2, 2-2-7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u>
2-2-6	<u>2-2-1부터 2-2-5까지와 2-2-7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u>

<삭 제>

23-14	<u>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u>
-------	---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

23-6	<u>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u>
------	--

23-14	<u>2-3-2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u>
-------	---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

23-6	<u>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 이를 입은 사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연 락 처	(02) 748 - 3092